

-국내사례연구-

<사례 1> 자발적인 정정보도, 미흡할 땐 재정정해야

사실개요

'81년 4월 17일 밤 10시반중 울산의 모여고생(18세)이 시험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던 도중 울산시 성남동 소재 대흥타자학원 건물앞에서 20대 청년으로부터 4층 옥상에 있는 타자학원에 있는 여자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아 무심코 그 청년을 따라 옥상까지 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갑자기 여고생에게 달려든 청년이 폭력으로 여학생을 범하려 하자 완강하게 반항하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옥상에서 투신, 척추리골과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부산일보와 경남신문은 다음날짜 지면에 경찰조서를 토대로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 피해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욕을 당한 것으로 보도했고 여고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기사내용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주변사람들 특히 학우들은 피해여학생이 누구인지를 능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허위보도라고 항의, 1단기사로 정정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 재정정을 요구 중재를 신청했다.

보도내용

'81년 4월 18일자부산일보 4면에는 이 사실을 『난행당한 여고생 4층 옥상서 투신』 제하의 기사로 「17일밤 11시 45분께 성남동 226의 43 대흥타자학원 4층 옥상에서 시내 모여고생(18)이 투신자살하려고 뛰어내렸으나 중상, 5 병원에 입원가료중으로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학생은 대흥타자학원앞을 지나다가 20대 남자(성명 미상)에게 학원건물 옥상으로 끌려가 심한 매를 맞고 욕을 당했다는데 이를 비관 자살을 기도했다 한다」고 보도했고 경남신문도 같은 날짜 11면에 『불량배에 봉욕 비관 여고생 옥상에서 투신 중태』 제하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경남신문의 경우 피해여학생의 학교의 소재지와 학년 그리고 여학생의 성까지 밝히면서 역시 「욕을 당한 후 이를 비관,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그 여학생이 입원중인 병원이름까지 밝혔다.

전기 두 신문 모두가 경찰조사를 토대로 기사를 보도한 것이나 두 신문에 기사가 보도된 후 피해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항의가 있자 일단 1 단 기사로 정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어머니 (G 모씨)는 정정보도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 「허위보도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학우들은 피해학생이 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크게 정정보도를 내서 어린 여학생의 오명을 씻어 주도록」 중재 신청을 냈다.

부산일보는 첫 보도 이후에 자진 정정보도(4월 25일자)했으므로 재정정을 거부, 중재에 불응했고, 경보신문은 중재기일에 관계자가 불출석 불성립됐으나 범인 검거 후 두 신문은 속보형식으로 「여고생의 순결」을 밝혔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미성년자의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늘 신경을 써야 될 일은 성폭행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그 피해자의 신분이 사회에 공개되어 또 한번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순결이 더럽혀졌다는 오명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정신적 고통과 명예를 훼손당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다고 해서 보도기관은 그 책임을 회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관계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막심한 것이 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부산일보의 경우는 피해 장소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여학생의 재적학교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해도 주위 사람들과 학우들은 손쉽게 피해학생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내용이 돼 있고, 경남신문의 경우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과 학년 성까지 밝히고 입원한 병원, 사건 발생장소까지 밝혀 피해학생의 신분을 거의 노출시킨 결과를 빚는 과오를 범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만약 꼭 사건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신중한 배려를 했어야 마땅했다.

허위사실이 보도된 것을 안 피해학생이 비관 끝에 학교에도 만나가고 괴로움에 어려움까지 겪을 정도였다니 그 공격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짐작할만하다.

<사례 2> 기정된 내용의 허위사실은 매체가 책임져야 사실개요

'81년 11월 19일자 일간스포츠에 기획연재물 「방송야화」(제 43회)가 인기 성우 고은정의 기고로 게재되었는데 내용은 라디오 드라마의 황금기였던 시절의 방송제작과정과 성우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엮은 것으로 인기성우 윤미림의 사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그런데 윤미림은 사생활을 공개한 내용 특히 학력과 그의 소재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으니 개인의 학력 등 사생활을 보도함에 있어 진실성 없이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이의 정정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공개보도 했을 때 그것이 외부인의 기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책임은 이를 발표한 매체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 중재신청의 요점이었다.

보도내용

「일간스포츠」 '81년 11월 19일자 8면에 게재됐던 『방송야화』 제 43회에 성우들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고은정이 엮어 나가는 가운데 성우 윤미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다.

즉 「……학적부에 이름이 없는 학생이 출연을 해도 경연대회에서 상을 주는 이런 풍토가 지금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지만 그 때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혜택으로 KBS의 1기생인 윤미림은 경희대 전신인 신흥대의 연극에서 수상을 계기로 학교에 편입되었고, 졸업 후 어느 만큼의 공간이 있다가 결국 동국대학원을 거쳐 일본 천리대에까지 가서 철학을 전공한 학자가 되었고, 지금은 소식조차 알 길이 없다. 또

대학으로 다니며 연극을 해서 당시 직업배우 같았던 천선녀는 결혼후까지 방송과 연극 그리고 TV에서 반생을 함께 보냈던 것이다. 그녀 역시 지금은 미국시민이 되어 곁에 없다.

<머리에 흰 칠을 하고 얼굴에 주름을 그려 넣으면서 하는 노역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 허연머리, 제 주름으로 노역을 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한은 그 노릇을 겪을 것이니 나는 떠나야 한다> 이것은 천선여가 당시 일간스포츠의 이민설보도를 꺼리면서 부랴부랴 이민을 가던 때의 마지막 코멘트 였다……」

윤미림이 경희대학에 들어가게 된 경위, 천리대에 들어간 후 학자가 된 얘기, 그리고 그 후 윤미림의 소식조차 알 길 없다는 대목 그것은 방송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어째서 그런 대목이 필요했는지 좀 아리송한 대목이라 하겠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

첫째로 대외적으로 공표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거나 글로 쓸 때는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그 본인에게 줄 사회적인 영향에 관해 재삼 신중히 검토한 후에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정도이다.

그 내용이 사회적 관심의 표적이 될만한 공익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도 진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발언하거나 기고하는 책임적 자세가 필요함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한 그것을 자의로 공개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일로 더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개인의 사생활과 연결시켜 공표한다면 그것이 선의의 표현일 경우라도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점 책임은 기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내용을 게재한 매체에도 책임이 간다.

따라서 기고내용의 검토, 재확인이 필요하다. 과연 윤미림은 고은정의 기고내용 중 ① 「경희대학에 들어 간 것을 불법으로 학교에 다닌 양 표현한 대목, ② 다니지도 않은 천리대를 다닌다고 쓴 점, ③ 엄연히 한국안에 살고 있는데 행방이 묘연하다고 표현한 것은 부당하니 정정하라」 고 중재신청을 해 '81년 12월 6일자 일간스포츠에 정정보도가 나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사례 3> TV 출연자의 발언내용을 삭제방영할 경우 사전합의해야 사실개요

'82년 2월 13일 KBS 2TV는 「시민법정」 프로그램에서 「택시합승」에 관한 내용을 방영했는데 「시민법정」은 고발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으로 이날 「시민법정」에서는 「택시합승행위」를 피고로, 관계증인에 대해 검사측의 심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을 녹화할 때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연한 조대훈(전국자동차노조연맹 연구위원)

은 택시운전사의 입장에서 택시합승의 부조리, 합승행위의 원인과 시정방법 등을 증언했으나 실제 방영될 때는 조대훈의 증언 가운데 택시합승의 부조리에 관한 부분만 방영됐다.

사전합의한 대로 녹화는 하고 실제 방영할 때는 아무 협의없이 조대훈이 합승의 부조리를 증언한 부분만 방영 됐다.

실제문제에 있어 방송은 매개 프로그램에 할당된 시간량에 따라, 방송될 내용이 신축성 있게 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제한된 시간안에 어떤부분을 방송에 내보내느냐 하는 데 따라 방송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부인사가 출연할 때 그것이 생방송일 경우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녹음이나 녹화일 경우 비방송전문가가 말한 내용을 전부 전파에 실는다는 것은 방송기술상 여러모로 문제가 있고 그것이 방송국 사정에 따라 재편집 방영될 경우 간혹 문제될 수가 있다.

보도내용

「시민법정」 프로그램이 「택시합승」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기 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연구

위원 조대훈은 동 프로그램제작팀과 사전협의(대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한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 대한 증언내용장면을 녹화하였는데, 이를 위해 조대훈은 자료수집, 출연했을 때 발언을 위한 원고작성등 만 3일간 힘들여 준비한 끝에 녹화를 했으나 KBS는 많은 부분을 삭제한 후 방영 하였다.

특히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연구위원인 조대훈은 「동 연맹의 조합원 (택시운전기사등)의 입장에서 ① 택시합승의 부조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과 ② 근본적인 시정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출연했는데 증언내용 대부분이 삭제 방영됨으로서 출연목적이 상실됐으며, 어떻게 노조간부가 택시합승의 불법성만 강조하고 운전기사들이 부득이 택사합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과 그 근본 시정책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출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 많은 항의를 받게 돼 노조간부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 문책까지 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KBS 에 항의, 결국 중재신청에 이르러 추후('82. 3. 26) 같은 「시민법정」 프로그램의 판 항목에서 조대훈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신문도 그런 면이 있지만 신문지면이 촬영의 제한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방송의 경우는 시간의 제약과 더불어 비방송전문가가 출연하게 될 경우 방송에 출연하는 외부인사의 발언내용 중 방송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부분을 도출해 내는 데 간혹 기술적인 어려움이 곁들여지게 마련이다.

방송에서 의도한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내용을 멋대로 발언한 대목을 전파에 실어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이나 출연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매우 사리에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너무 장황할 때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만을 편집해서 방송하는 것이 또한 방송당사자로서는 피치 못할 제작상 기술적인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방송사의 편의에 따라 출연자에 대해 아무런 사전 양해없이 한 부분만을 편집 방영하는 것은 첫째로 도의적인 면에서 안될 일이고, 공정을 기해야 될 언론매체가 자칫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점이다. 오히려 출연자의 발언내용이 부적당하다면 그 내용 전체를 방송 안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사례 4> 문제된 전해린의 평전, 사자의 사신공개는 프라이버시침해 사실개요

「사자는 무언」이라는 명언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자에게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말은 아니며 더구나 사자의 명예는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다. 「사자는 무언」이기에 더욱더 그에 관한 명예는 지켜져야 되며, 때문에 사자의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범위는 그것을 법이 규제하고 있다.

사자와 유족의 명예에 관해 보도한 내용이 문제된 예는 황윤석판사의 사인을 선정적으로 다룬 사례(여원 '84년 1월호. 『한국 책초의 여판사 황윤석, 그 의문의 죽음』, 『법도 추리도 풀지 못한 영원한 미궁』 제하의 글)도 있지만 월간지 여성동아 '82년 4월호부터 5월호에 걸쳐 연재된 「평전-아! 전해린 천재의 불꽃놀이」가 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족들의 항의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 예가 있다.

문제된 부문은 「여성동아」 '82년 6월호(「평전-아! 전해린 ③ 천재의 불꽃놀이, 수수께끼의 죽음」).

번역문학가 이덕희씨가 연속집필한 평전내용에서 주로 망인 전해린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기술하면서 유족의 동의 없이 유족의 사진을 게재했고, 평전내용이 사실을 왜곡, 공익과는 관계 없는 사자의 사생활을 억측과 가십으로 평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유족들이 주장, 여성동아는 전해린 평전의 연재를 중지하는 한편, 사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데 대한 사과문과 함께 사자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내용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중재결과, 「여성동아」는 연재중인 「전해린 평전」을 7월에는 휴재, 8월호에 「전해린평전」 최종회를 제3의 평자에 의한 「전해린 이전」과 함께 게재키로 합의, 결국 약속대로 「여성동아」 8월호에 『평전-아! 전해린 천재의 불꽃놀이- 안개속의 인물 (장아제베도>』라는 제하의 최종회를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 않고 게재, 한편 제3의 평자가 쓴 『전해린의 인생과 문학-목마른 계절에 핀 야생화』라는 제하의 「전해린 약전」을 함께 게재해서 사태는 수습됐다.

보도내용

'82년 여성동아 6월호 『평전-아! 전해린 ③천재의 불꽃놀이 수수께끼의 죽음』 제하의 기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세코날 마흔알을 친 걸로 구했어!」

그녀는 좋아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중략) 그녀는 불면증 때문에 늘상 수면제를 상용하고 있었고 또 때때로는 신경을 마취시키기 위해 「매개물」로 그걸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짐작컨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자살이건 과실이건 간에-바로 40 알의 세코날이었음에 틀림없다 내가 축하하고 내심 부러워했던 마흔 알의 세코날이 바로 그녀를 죽인 「원흉」이었다. (중략)

도대체 막연하나마 내가 예감이라도 했겠는지? 그녀가 마흔알을 다 삼켰는지 일부를 남겨 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살은 그것이 생의 거부이건 포기이건, 어쨌든 <사는 것에 실패했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또 삶의 쪽에 볼 땐 배신이요 반역으로 느껴질 것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가 환상을 버리고 언제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 세계의 허무와 마주한다면 자신과 세계와의 단절 앞에서 공포에 떨고 전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발광하거나 백치가 되거나 또는 미칠 듯이 사랑에 빠지거나 도박에, 알콜에 또는 마약에 취해 있지 않는다면 자살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과연 그가 자살로 도피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비판할 수 있을까? (하략)

한편 이 평전 속에는 전해린이 죽기 몇일전 C 씨에게 쓴 편지의 일부(미발송)도 공개되기도 했다.

또 「5년전 뮌헨에서 그녀가 자살을 결행하기 직전에 마음을 돌렸을 때 그녀의 일기에다 이렇게 썼다(하략)」는 대목도 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

전해린의 유족이 주장한 대로 사자의 사생활을 억측과 가십형식으로 평했다면 그것은 분명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자의 순수한 사신을 유족의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일기를 공개한다면 그 역시 프라이버시침해는 물론 저작권침해도 된다.

분명 심장마비로 1965년 1월 11일 31세로 고인이된 전해린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사망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기술한 것, 사자의 유족의 사진을 승낙 없이 지면에 공개한 것 등은 정상적인 보도행위 라고는 볼 수 없다.

전혜린의 사후 1977년 11월에 발간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전혜린 에세이속에 전혜린이 그의 동생(전채린)에게 보낸 한 서한(1957. 2, 7)에 시인 프랑스의 시 「나는 두렵다. 그리고 죽고 싶지 않다. 생은 귀중하고 단 하나다 그리고 나는 실컷 살지 못했다」는 귀절을 적어 넣은 것만 보아도 전혜린은 생의 의욕에 충만해 있지 않았나 볼 때, 그의 죽음을 자살로 간단히 단정할 수 있을지?

<사례 5> 실존인물의 극화, 사실왜곡없어야

사실개요

'82년 6월 24일 밤-7시부터 9시 사이에 MBC-TV는 6.25 특집 「포로들」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했는데 6.25의 참상을 되새기고 반공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이 드라마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범자 조사에서 해주형무소 수감자 집단학살사건 전모를 캐내는 것이 그 내용.

이 드라마에 나오는 천영환은 1948년도에 해주에서 있었던 해주방화사건 관련자로 검거돼 해주형무소에 수감중 복귀가 자행한 집단학살현장에서 살아 남은 반공청년으로 그후 대한반공 청년회 중앙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의 「보다 뚜렷한 사실을 실증 할 수 있는 생존자가 있는데도 드라마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극화됐고 등장주요인물의 사람됨이 잘못 표현됐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방영된 후 문제가 된 바 있었다.

즉 대한 반공청년회장 이윤준과 동 청년회중앙위원회 의장 천영환은 「반공우익포로들은 인격이 결여된 바보나 불구에 가까운 병신 등으로 출연시켜 대한반공청년회와 천영환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해주형무소 수감자를 학살한 윤석진과 몇몇 간수들은 똑똑한 사랑들로 출연시켰으며, 자유를 선택한 윤석진이 수사관들의 집요한 수사로 자살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간첩자수 권장책에도 위배된다」고 항의, 재제작을 요구 중재 신청에 이르렀다.

보도내용

이 드라마는 거제도포로수용소 전범자 조사과에서 해주형무소 수감자 집단학살사건 전모를 캐내는 내용인데, 당시(50. 10. 17) 해주형무소에 수감중인 반공우익인사들을 열차편으로 후송 도중 터널 속에서 복귀가 집단학살을 감행한다.

거제도포로수용소 조사과 박대위와 김종위는 학살현장에서 살아남아 그후 귀가도중 UN 군에 포로(언어불통)가 된 천영환을 비롯한 반공포로들의 협조로 역시 거제수용소에 수용된 복귀군 포로중 해주형무소 간수들을 상대로 집단학살 현장 발포자 색출에 나선다.

당시 해주형무소 의무관이었던 윤석진은 수용소야전병원의 한손장의 신임을 얻어 부상포로의 치료를 돕고 있었고 특무장 배태민은 야전병원에 입원중 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윤석진은 「수감자들이 열차안에서 복동을 일으켜 발포케 됐다」고 증언했으나 조사과 박대위는 학살지령에 의한 발포로 보고 특무장 배태민을 찾고 있는 시기에 휴전이 조인돼 포로송환심사가 시작되자 윤석진은 송환을 거부한다. 그때 윤석진의 결단을 축하하러 김종위와 야전병원에 온 천영환은 거기서 배태민을 발견, 박대위가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배태민은 「발포명 령자는 윤석진이라」고 증언, 박대위와 김종위가 야전병원으로 가서 윤석진을 체포하려 하자 윤석진은 자살한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극화할 때 물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나열한다면 드라마로서의 흥미가 감 돼 우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으니 방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드라마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사실과 동떨어진 가공의 스토리를 엮어 내거나 극중인물을 실제와 달리 흥미본위로 사실을 왜곡해서 묘사하는 것은 물론 안될 것이다.

해주형무소 수감자 집단학살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천영환은 집에 돌아가는 도중 언어불통으로 억울하게 UN 군의 포로가 돼 』 거제도로 후송됐고 그 후 포로수용소안에서 반공우익 청년들을 규합, 대한반공청년단을 결성해서 복귀 고급군관을 색출하는 데 공헌했으며, 한편 3만 6천여명 반공청년들이 자유를 선택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도 한 실존인물이었다.

이 드라마와 가장 관련이 깊은 실존인물의 증언을 듣지 않고 사실을 극화했다면, 또 그 내용이 실존인물이 증언하는 바와 크게 달랐다면, 그리고 천영환의 주장대로 드라마 내용이

천영환을 비롯한 반공청년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항의에 대상이 된다. 결국 MBC-TV는 천영환등의 중재신청에 따라 '82년 10월 15일과 22일 거의 같은 시간대에 「113 수사본부」 특집 「투사들」아라는 드라마를 통해 천영환의 주장을 반영시켰다.

<사례 6> 시사만화라도 경박, 저속한 표현은 금물 사실개요

'83년 3월 11일자 조선일보 8면에 만화 「야로씨」(필자 오룡)는 대학정원 탈락생에 대한 문교정책을 풍자한 내용을 실었다.

「야로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돼 있었다.

즉 「당국 : 탈락대학생은……」, 「당국 : 방통대학으로 가라」, 「그게 아닙니다」, 「당국 : 정정한다. 방통대(방통대)로 가라」는 내용으로 문교당국자와 야로씨와의 대화형식으로 일반대학 탈락생의 한국방송통신대학 편입에 관한 문교 정책을 풍자한 것이었다.

보도내용

문제는 만화내용에 「탈락대학생은, 방통대학으로 가라」는 데서 발단됐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 총학우회장 김인종이 조선일보 발행인을 상대로 만화내용에 대한 사과문 게재와 아울러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특집을 게재하라고 요구, 중재신청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방송통신대학 관계자는 「야로씨」의 만화 내용이 「공익신문이 지녀야 할 공정성과 정확성을 잃은 처사로 그와 같은 날조된 만화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오도케 한 몰지각한 표현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과 학생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처사」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로 그와 같은 내용의 만화를 게재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지상을 통해 깊이 사과할 것」을 요구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 「야로씨」의 만화는 두가지 면에서 큰 충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첫째는 대학정원탈락생의 경우 실의에 빠진 그들이 갈 곳은 「밥통대학」 밖에 없는가 하는 좌절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학생들에게 의외의 좌절감을 안겨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면학의 기회를 얻지 못해 방송통신대학이라는 면학기회를 고맙게 활용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면학자를 비롯한 만학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어떤 면에서는 모독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고 본다.

「야로씨」의 의도야 어떻든 그 표현방법은 이상 몇가지 점에서 벗어나간 점이 없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 특히 방송통신대학의 실체를 잘 인식 못하는 일반국민들에게까지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 쉽게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중재결과, 합의에 따라 조선일보는 3월 29일자 8면 만화 「야로씨」 바로 밑에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생과 관계자들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왜곡되게 표현된 데 대하여 위 학생과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금지와 명예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었다면 이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실었고, 이어 '83년 4월 7일자 8면 동지 지면에 『12만 학생들 의지로 「면학」 열기』, 『방송통신대학』, 『정규대학과 같은 교육』, 『'82년 5년제 학사과정으로 승격』, 『학사 중엔 현직 판사·교수도』, 『10개학과…… 내년 중·불어과 신설』 제하의 기사로 방송통신대학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보기도 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신문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에서 오락잡지와는 스스로 다른 품위와 책임을 지닌 제작자세가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시사만화의 경우 그 증거적 성격이 충분히 이해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박한 표현이나 저속한 내용을 담아 사회의 공기답지 못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오히려 만화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한 표현과 격조높은 풍자를 통해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현실사회의 답답한 일면을 풀어주는 통풍구 역할도 담당해야 될 것이다.

<사례 7> 방송비평, 거시적 관점에서 균형을 이뤄야 사실개요

'83년 4월 4일자 동아일보 12면 TV 주평란에 『KBS 잘살아보세 부작용』 제하의 기사가 게재됐다.

농어촌 주민대상의 「잘살아보세」 프로그램은 각종 영농성공사례나 농어촌 고소득사업 등을

소개, 각종 영농정보를 농어촌 주민에게 알려 생산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한 것인데, 「소재빈곤으로 성공사례 등의 내용이 침소봉대되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뒤늦게 손을 댄 농어민들에게 더러는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등 내용의 기사로 동아일보가 『잘살아보세』 프로그램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허위 기사를 게재, 시청자들로 하여금 KBS 『잘살아 보세』 프로그램을 불신케 했고, 그와같은 보도로 취재대상자들이 출연기피, 제작,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담당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케 했다」고 주장, 『잘살아 보세』 제작담당자 (이보길)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데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기사게재를 요구,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방송내용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끌게 한 실례로 방송에 대한 평론의 어려움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였다.

보도내용

'83년 4월 4일자 동아 일보 12면에 『KBS 잘살아 보세 부작용』이라는 제하의 TV 주평은 다음과 같은 요지 였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은 방송국이 개편에 따라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다(중략) 그러나 <음악과 재미>가 남기는 역기능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중략) KBS의 『잘살아보세』를 한번 보자. 이 프로그램은 각종 영농 성공사례나 독농가 기계영농 및 농어촌의 고소득 사업 등을 소개, 각종농업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생산의욕을 북돋워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재빈곤으로 인한 침소봉대가 더러는 피해를 주는 원인도 된다. 예를 들면 소득사업으로 소개된 <비육우 사육>이나 (흑염소 사육) 등이 그것들. 소값올라 관찬은 수익사업으로 소개된 (비 육우 사육)은 60만~70만원짜리 석달된 송아지 값을 1백만원 이상으로 뛰게 부채질했고 도시민의 수요가 큰 것으로 소개된 (흑염소사육)은 5만~6만원하던 염소값을 20만원이상으로 올려놓은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뒤늦게 손을 댄 농민들은 내년은 길러야 성우가 되는 송아지를 사 놓고도 큰 소값이 160 만

~170 만원 밖에 안 돼 사료값도 못 건질 판이 됐다. 10 만원 안팎이면 흑염소탕 값이 22 만원~23 만원으로 뛰자 수요가 줄어 남보다 늦게 비팜 흑염소를 사서 키우던 판로가 막혀 울상이 되고 있다

화훼제배, 개 사육 등도 같은 경우들이다. 물론 정보에 어두운 농어민들은 정확한 시장분석과 전망 없이 손을 댄 것도 과오이겠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특정사례만을 침소봉대하는 우는 삼가야 하겠다」는 것이 줄거리.

평이란 공명정대할 때 평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그 프로그램의 좋은 부분과 미연한 부분을 아울러 공정하게 평가함이 없이 프로그램의 특정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할 때 사실을 공정하게 보는 독자들에게는 그 평은 신빙성을 잃게 마련이고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남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특수한 기술이나, 새로운 영농방법 등, 이제까지 농어민들이 알지 못하던 영농기술이나 어로방법내지 특용작물 등에 관한 방송내용이라면 모르되 소값이 오를 때 송아지를 사서 길러 서 우가 되면 적당한 값을 받고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농민이면 누구나 시도해 온 오래된 방법이다.

비육우 사육하면 그것은 벌써 영리목적의 규모가 큰 영농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사전조사와

채산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아래서 착수하는 것이 상식이고 TV 프로그램한 보고서 갑자기 사 업을 시작하는 성급한 농민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소값이 폭락한 책임은 단순히 KBS 의 「잘살아 보세」 프로그램 탓으로 돌린다면 사태를 너무도 단순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결국 동아일보는 「잘살아보세」가 농어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임을 주지시키고 제작진의

애로 사항들을 적시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중재신청이 취하된 결과로 봐서 TV 평이 미흡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례 8> 고소장을 토대로 한 보도는 위험해

사실개요

'83년 7월 14일자 서울신문 11면에 『매질 남편 경찰에 고소』 제하의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가 게재 됐다.

즉 밤늦도록 약국에서 일하다 집에 온 부인이 귀가시간이 늦다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 남편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부인 H씨가 3년간 빚을 얻어서까지 S 교회에 헌금을 해 그 문제를 두고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것.

그러나 고소를 한 부인은 「교회에 헌금한 것은 사실이나 빚을 얻어서까지 헌금한 사실은 없고 더구나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늦도록 약국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채관계로 인한 남편의 폭행이 고소의 발단으로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다」고 주장, 왜곡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으니 정정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고소사건이 때로는 뉴스가 될 수도 있으나,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고소내용만을 토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신중을 요하는 문제이다.

보도내용

'83년 7월 14일자 서울신문 11면에 『매질남편 경찰에 고소』, 『2주 진단사불여 약사부인, 귀가늦어 싸움끝에』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가 게재됐다.

「서울 동작구 H동에 사는 H모씨(46세)는 13일 남편을 처벌해 달라고 2주진단서를 첨부 노량진서에 고소장을 냈는데 남편 L모(46세)씨가 <가정부인이 왜 매일 늦게 들어 오느냐>며 발로 배를 차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남편 L씨는 「부인이 1천만원의 빚을 얻어 교회에 헌금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밤늦도록 약국을 단지 않아 불만을 품어 왔으나 폭행을 해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말했는데 L씨부부는 66년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으나 최근 3년간 부인 H씨가 빚을 얻어 가며 교회에 헌금을 해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것.

이에 대해 H씨는 「70년도에 4층 빌딩을 건립 할 때 빚을 졌고, 그후 은행부채로 그 건물이 처분될 지경에 이르자 교회에서 돈을 빌려 부채를 정리, 파산을 면했고 부채정리를 위해 78년부터 약국을 경영, 부채가 정리되자 그 보답으로 수회에 걸쳐 교회에 헌금했으나 빚을 얻어 교회에 헌금한 사실은 없다. 야근하면서까지 약국을 경영한 사실도 없고,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어 정신수양원에 일시 입원한 적마저 있었다.

또 남편이 배를 쳤다고 하나 10여회에 걸쳐 머리를 벽에 부딪게 한 것이니 허위보도이며 3년간 교회에 헌금했다는 부분 역시 2년간 교회에 다녔으니 허위보도였다」고 주장,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정보도문을 통해 『교회헌금으로 빚진 일 없고,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행』이라는 제목아래 기사를 내되 앞서 지적한 부부싸움의 원인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발단됐으며, 1천만원은 교회에 헌금하고 그 돈을 메우려고 밤늦게까지 약국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힐 것과 교회헌금관계도 빌딩을 지을 때 진 빚 때문에 그 건물이 은행부채로 경매처분될 지경에 이르자 당시에 다니던 교회 (헌금을 한 교회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다름)에서 돈을 융통해서 파산을 모면했고 그 보답으로 수차에 걸쳐 1천만원을 헌금 했다는 점을 밝히도록 서울신문에 요구했다.

결국 서울신문은 이미 보도된 내용의 기사와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제목과 기사로 정정보

도문을 내기로 합의하고 그해 7월 29일자 11면에 정정 보도를 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장을 토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 이유는 고소사건의 경우 일방적인 내용이 많고 피고소인의 주장 또한 전혀 고소내용과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구나 사실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기자가 판단해서 그 진부를 가리는 모험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도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형평되게

취급해야 될 것이며 방방의 주장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피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례 9> 풍자만화라도 기본 사실을 왜곡해선 안돼

사실개요

'83년 8월 15일 충남 천원군하에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현장에서 기념관 건립기공식이 거행되었는데 독립기념관 기공식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있었다.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자 중앙일보 7면 「왈순아지매」 (2629 회) (필자 정운경)라는 만화 난(4 토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풍자만화가 실려졌다.

『왈순아지매』의 만화내용은 「시민 : 기념관 당국이죠? 내가 낸 성금으로 벽돌을 몇장 쌓게 되죠?」, 「독립기념관 : 얼마 냈지요?」, 「시민 : 만원요」, 「독립기념관 : 이미 썼수다. 불꽃놀이 화약 한방에 9천원이에요. 평」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됐다.

어떤 사실을 만화로 풍자할 때 간혹 그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면 그 결과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그와같은 실례의 하나였다.

만화내용이 문제됐던 것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물가를 풍자한 「고바우」 만화 (필자 김성환) 내용(당시 동아일보에 게재)이 그대로 복귀 선전물에 악용돼 한때 「고바우」 필자가 억울하게 괴롭을 당한 것은 매우 특수한 실례로 기억에 남는 사례였으나 이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보도내용

이 만화 (「왈순아지매」)가 보도되자 독립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춘생은 『왈순아지매』의 내용이 중대한 왜곡보도라고 주장, 독자와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사과하는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만화로 그려 게재하도록 요구('83. 8. 20)하여 중재신청을 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 안거생 위원장을 「독립기념관 추진 위원회의 사무요원까지도 모두 문화공보부 산하단체에서 차출, 운영하고 있고 일체의 경상비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출, 국민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직접비에만 지출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만화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 했다.

또 8.15 광복절날 독립기념관기공식 불꽃놀이는 「광복절과 독립기념관 기공식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거기 소요된 경비 역시 충남도와 천원군이 분담한 것으로 국민성금에서 지출된 바 없다」고 밝히고 사실이 그러함에도 만화내용은 「독립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의 정성과 기대를 저버린 것처럼 오해하게 한 것은 물론 앞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왜곡보도였다」, 따라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볼 때 만화내용이 어떤 사실을

빗댄 풍자요, 꼭 사실에만 충실할 필요는 없는 만화특유의 범주를 주장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중재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인 8월 19일자 동지 만화란(「왈순아지매」)에서 「독립기념관 건립 기공식때 불꽃놀이에 쓰인 화약 값이 성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밝혔고 그 이상의 사과문이나 정정만화게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측 요구를 거부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만화가 어떤 사실을 희화화할 때 결코 그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을 배경으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특히 시사만화의 경우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허구의 사실을 토대로 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중매체에 게재되는 시사만화는 그것이 사실을 풍자하는 내용이기때문에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신문을 펴들 때 「오늘은 만화에 무슨 재미난 풍자가 담겼나?」 하는 기대감으로 만화란에 눈을 돌린다. 더우기 만화는 어른이나 어린이는 물론, 누구나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어떤면에서는 그날의 톱기사 보다는 더 흥미를 끌 수 있고 또 그만큼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생한 뉴스로 둔갑할 수도 있다.

이건 「만화이다」라고 독자모두가 순간적인 흥미거리로만 소화해 버렸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묘사의 대상이나 내용을 매우 신중히 선별해야 될 것이다.

<사례 10> 유명인의 사인보도,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사실개요

'61년 4월 21일 상오 9시반 당시 서울 지법근무 황윤석판사 (최초 여판사)가 자택(당시주소 : 서울 성동구 신당동)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당초 신문은 김판사가 남편 손씨와 함께 음독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체해부결과와 토사물을 감정한 결과, 황판사의 사인을 약물에 의한 사고사로 단정, 검출된 약물이 감기약 베나드릴과 아스피린 및 요힘빈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후 담당검사(서울지검 오택근)는 독살혐의를 두고 수사, 남편 손씨와

시어머니 차씨를 구속(김택돈판사가 영장발부) 했으나 남편 손씨가 요힘빈의 복용을 맹렬히 부인했고 또 그와 같은 약을 먹었다는 정황도 수사상 나타나지 않자 두 사람의 구속을 해제, 불구속 조사를 계속했다. 그후 병원은 권위있는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의뢰, 시체를 해부 재감정한 결과 요힘빈은 검출되지 않았고 미량의 불화령산이 검출됐을 뿐인데, 그 후 검찰이 미 극동사령부 감식소에 고인의 위액, 피, 소변을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역시 요힘빈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이 그해 11월 남편 손씨만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4년 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은 손씨는 2심에선 무죄판결 그 후 검찰도 자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손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보도내용

4.19 이후 그야말로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 있던 시기인 '61년 5월 황판사의 죽음을 보도하는 신문의 보도내용은 실로 요란했다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었다 황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판사였다는 점이 뉴스의 초점을 이뤄 인물사진과 함께 실명으로 사회면 톱으로 보도 되었다. 우선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사인 때문에 더구나 경찰이 약물에 의한 사고사로 사인을 밝히면서 검출된 약물 가운데 최음제인 요힘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특히 일부신문은 선정적인 각도에서 기사를 다룬 경향도 없지 않았다.

때문에 남편 손씨가 요힘빈 복용사실이 없음을 극력 주장한 부분은 크게 지면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와 같은 보도각도에 가려져 법원에서 법의학자들(전과학수사연구소장 류영고, 전 동연구소 이화학과장 정창용, 서울약대 분석화학교수 백남호, 서울의대 약리학교수 홍사악)에게 시체 재해부와 재감정을 의뢰하여 제출된 감정서에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그러나 사건 당초의 「요힘빈이 검출됐다」고 고소됐을 때의 충격적인 뉴스보다는 우선 기사자체가 맥폴린 내용으로 작게 취급될 수 밖에 없었다.

그 훨씬 후 미 극동사령부 감식소에서의 분석내용문체의 초점인 요힘빈은 「네가터브」로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역시 당초의 「요힘빈 검출」 보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기사가 소홀하게 다뤄진 감이 짙었다. 결국 한 여인의 죽음이 그가 여판사였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요힘빈이 검출됐다는 최초의 경찰수사 결과가 나중에 번복됐는데도 보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준 사건의 인상은 그의 사인에 대해 이상한 의혹을 품게 하기에 매우 알맞는 내용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양판사의 사인을 유기 치사로 단정 했던 검찰이 기소된 관계자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상고를 자진 포기한 것만 봐도 황판사의 사인을 뚜렷이 밝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1차감정에 이은 2차, 3차 감정결과, 당시 어떻게 보면 보도의 핵심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요힘빈」 복용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한 개인의 죽음을 놓고 그 사인을 보도하는데 있어 고인의 명예와 그 유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이를 보도대상으로 삼는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취재, 보도 자세가 요구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건이 있는 지 20 여년 후인 '84년 월간 잡지 「여원」 1월호 실린 『한국 최초의 여판사 황윤석 그 의문의 죽음』 제하의 글이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문제됐던 것도 대부분 직접취재가 아닌 간접취재(많은 부분을 신문보도 인용)라는 위험한 방법에 의존한 결과라고 본다.

<사례 11> 인터뷰 내용이 사전 동의없이 개작, 윤색되어선 안돼 사실개요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현격하게 달리 개작돼 보도됨으로써 인터뷰에 응한 본인이 정정보

도와 사과문게재를 요구, 결국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정정보도청구소송에까지 간 예로 84년도 「여성자신」(학원사발행, 발행인 김영수) 2월호에 게재됐던 『택시안의 남자들, 달리는 욕망 뒤에 숨은 두 얼굴의 사나이들』 제하의 르포기사가 있다.

이 르포기사는 3명의 여성택시운전사(H모씨 외 2명)들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구성된 가명의 수기형식을 통해 남자승객들의 치부를 파헤친 내용인데 인터뷰에 응했던 여자운전사의 사진도 함께 게재돼 있었다.

문제는 「여성자신」이 약속을 어기고 신청인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 과장하여 마치 여자운전기사들이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 묘사했고 더구나 인터뷰에 응한 여자운전사의 사진까지 게재, 기사내용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처럼 독자들을 오해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H 여자운전기사의 항의로 제기됐다.

보도내용

'84년 「여성자신」 2월호에 실린 『택시안의 남자들, 달리는 욕망 뒤에 숨은 두 얼굴의 사나이들』 제하의 여자운전사 인터뷰 르포기사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할 지면이 없으나 몇 줄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줄거리의 기사가 특히 눈에 띈다.

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그를 뿌리치지 못했다』는 중간제목아래 담긴 내용 중에는

「비오는 밤 11시 늦은 시간에 30대중반 남자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도중에서 남자승객의 요구에 못 이겨 차를 멈추고 음료수와 빵을 함께 먹고, 승객은 맥주를 마시는데 차를 다시 몰고 가던 도중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차의 브레이크를 밟고 허리를 꺾이는 등 여자운전사의 가슴을 헤치며 입술을 더듬으려 할 때 평소 배워 둔 호신술로 승객의 급소를 때려 고꾸라 뜨린 후 차문 밖으로 밀어 냈다가 그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② 『사는게 쉽지 않은 세상이니 우리 즐겁게 살아 봅시다』라는 부제목이 달린 내용 중에는 33세의 여자 운전사의 경우를 들어 「장거리 손님 때문에 밤늦게 운전하게 된 날 20대중반의 덩치가 큰 남자승객을 태우고 천호동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내 치근덕거리기 시작하더니 강변도로에 들어서자 워커힐 호텔로 가서 커피나 마시자, 시간비는 후하게 준다고 제의, 호텔에서 커피 아닌 양주를 마시던 승객은 춤을 추자고 유혹하다 거절당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나와 후미진 도로가로 나왔을 때, 드라이버로 위협, 그날 번돈을 몽땅 털리고, 밤이 늦어 지나다니는 차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반나체로 옷이 찢기는 가운데 폭한의 손놀림에 희롱당했다」는 내용, 미혼인 다른 여자운전사는 「시골노인내외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려 그 노인 내외의 집까지 가서 총각(노인의 아들)을 소개 받아 다시 그 총각과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 술을 마신 끝에 그 총각과 결국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입술을 허용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3명의 여자운전사들은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여성자신」지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부탁을 받고 택시운전 경험내용을 인터뷰형식으로 대답한 것뿐인데 마치 「여자운전사들이 남자승객들에게 불유쾌하고 선정적인 희롱의 대상이 되고 유린되고 있는 양 사실을 왜곡 가필했다」고 항의 중재신청에 이르렀고 결국 불성립돼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번졌었으나 「여성자신」 3월호에 정정기사를 내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불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기는 했다.

문제는 인터뷰기사의 경우, 인터뷰에 응한 대담자가 말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의 공기인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될 수 없는 난잡한 내용일 경우 그 내용을 여과해서 공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하지도 않은 말을 삽입하거나 전혀 허구의 사실을 가필, 인허뷰 내용을 조작할 경우 도의적인 책임도 책임이거니와 형·민사책임까지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사례 12> 불분명한 사고사인보도, 현장확인이 필요해

사실개요

'85년 1월 16일 밤 겨울방학을 이용, 경남 고성군의 산화감시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진주 경상대 축산과 1년에 재학중인 정종인군(20)이 군에 입대하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자전거로 귀가 하던 중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신흥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서 관련자 14명을 소환조사했다.

보도내용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변사사건은 85년 1월 19일자 부산일보 10면에 다음과 같이 보도됐다.

즉 『술마시고 길서 자다 대학생 1명 숨져』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면 「산화감시원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진주 경상대 축산과 1년 정종근군(18)이 17일밤 10시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 하다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신흥교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잠자다 동사했다.

정군은 지난 9일부터 고성군 산화감시원으로 아르바이트 해왔는데 이날 감시업무를 마치고 군에 입대하는 친구 최진철군(20)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고 되어 있다.

기사 내용중 우선 사망한 대학생 「정종인」군의 이름이 「정종근」으로 잘못됐고, 그 연령도 20세인 것이 18세로 틀리게 보도됐으며, 변사한 날짜도 16일밤인 것이 17일밤으로 잘못 보도된 것만 봐도 이 기사는 기자가 현장 취재한 것이 아니라 전문보도가 아니면 경찰보고를 그대로 받아 기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학생의 죽음이 사회적 관심을 끌만한 것이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우선 기사의 내용자체가 사실과 다른 점이 3군데나 발견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취재된 기사라고는 보기 어려운 어설픈 기사였다.

특히 변사사건에 있어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가가 핵심이 되는데 술에 취해 길을 가다 다리에서 굴러 떨어져 취중에 잠이 들어 그대로 얼어 죽은 것으로 돼 있어 독자가 이

기사를 볼 때 우선 느끼는 것은 얼마나 술을, 그것도 대학생신분으로 피 마셨기에 젊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일어 죽었을까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기사 내용 이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우선 변사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와 상황증거를 토대로 하되 그 사인이 분명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기자가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없는 성질의 매우 복잡한 보도 대상이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다 다리에서 떨어져 그것이 치명상이 돼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면 또 모르되 술에 취해 잠자다 죽었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상황이라 아니 볼 수 없다.

만약 경찰보고를 기사화했다면 「경찰에 보고 된 바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상세한 내용은 계속 조사중에 있다」는 정도로 뒤를 두고 보도하는 것이 정도이지, 기자가 단정적으로, 현장상황을 확인도 안하고 앉아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문제의 기사는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인을 임의로 단정 보도했으니 정정보도하

라」는 유족들의 항의와 중재신청에 따라 『동사 처리된 대학생 교통사고로 재수사』 제하의 정정 기사를 추후('85. 2. 22)에 부산일보에서 게재했지만 유족들이 정군의 변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변사한 정군의 사체위에 정군의 자전거가 얹혀 있었고 또 자전거가 다른 물체와 강하게 충돌한 결과로 차체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음에도 정군 자신의 몸에는 자전거에 의한 상처가 없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날 정군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끌고 갔다는 것을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증언하였고 정군의 변사체가 발견된 사고현장부근 다리 앞 약 70미터 지점에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걸었을 때 보이는 타이어 자국을 모래와 흙으로 지운 흔적 (겨울이라 땅이 얼어 있었음)으로 봐서 교통사고사의 혐의가 짙은 사건이었다.

기자는 마땅히 사고사한 학생의 유족과 친구를 만나 사고사 전의 상황을 취재했어야 한다.

<사례 13> 복합적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 속단은 오보의 시발

사실개요

'85년 6월 30일 북한강 청평호에서 K대학 정외과 76 동문회 야유회 가족등 26명 (남 17·여 9)을 태운 동력철선(3.6톤 선장 최홍섭 42)이 균형을 잃고 뒤집혀 9명이 익사, 선장 최씨등 18명은 구조됐는데 정원 13명의 나룻배에 27명 (선장까지)을 태워 하중을 못 이겨 낮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배옆을 고속으로 지나던 모터보트가 바로 배 앞을 가로지르면서 물결이 넘쳐 모터의 시동이 꺼지면서 배가 머릿부분부터 곤두박질, 침몰됐다. 사고원인으로 ① 정원초과 운항 ② 선부의 운항능력부재 (신체부자유자로 허위서류로 등록) ③ 쾌속모터보트가 가로지르면서 일으킨 파랑 ④ 선체의 구조적 결함(길이 7.9미터, 폭 2.8미터로 기본구조가 잘못돼 있는 것-규정보다 배길이가 1미터 더 길게 제작 돼있었음) 등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런데 일부신문과 통신이 사고원인으로 승선자들의 대부분이 술에 취해 선상에서 우왕좌왕한 것(연부의 진술)이 사고의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보도해 문제가 제기됐었다.

보도내용

당시 한국일보는 『어김없는 여름 사고』 『예고된 참사도 못막는 부끄러움이』 제하의 사설(85. 7. 2. 2면)과 『청평 나룻배 전복의 교훈』, 『사고 요인 「복합」 ……예상된 참사』, 『정원초과·승객음주·감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얽힌 무모한 물놀이』 제하의 해설기사(같은 날짜 10면)와 『행악귀로 배침몰 9명 익사』, 『청평호서 정원 2배·만취승선 참변』 제하의 사건기사(같은 날짜 11면)를 보도했는데 한국일보에 게재된 동 나룻배 전복 사건 관련 사설은 「13명 정원을 무시하고 27명을 태운 것이 도선안전수칙 제 1 조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관리에서 금기사항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음주도 참사 재현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지적, 「동문끼리인 승객 대부분은 물론, 사공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기가 처했을 때 판단과 동작의 균형을 가누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지적하면서 청평호사고를 청원군 대청호에서 일어났던 81년 8월 21일의 놀잇배 전복사고(술취한 동갑 계원이 술과 음식을 주고받다 배가 기울어 뒤집히는 바람에 9명의 익사자를 냈다)에 비유했다. 10면의 해설기사에도 정원초과와 승객음주 등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또 11면의 사건기사에도 다른 사고원인과 함께 「만취승선」이 참변의 중요원인으로 지적 보도됐다.

한편 청평호 나룻배전복사고는 연합뉴스에도 사고 다음날인 7월 1일 오전 7시 10분 제 1보로서 사고원인으로 「정원초과」와 함께 「술취한 승선자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균형을 잃고 기우뚱거리는 순간 이에·놀란 승선자들이 배앞쪽으로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배가 뒤집혔다」고 보도했고 그 밖의 복합적인 사고원인이 속보로 보도는 됐으나 지방신문(2일자 부산 일보, 1일자 광주일보, 역시 같은 날짜 대전일보, 7월 1일자 강원일보 등)에 연합뉴스 제 1보가 전재됨으로써 사고의 주요원인이 정원초과와 술취한 승객의 무질서한 행동에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대형사고일수록 사고의 원인은 단순치 않은 것이 상례이다.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기 쉬운 나룻배전복사고는 정원초과, 여기 부수되는 승객들의 부주의 특히 음주만취된 승객의 실수가 사고의 발단이 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을 규명 보도할 때 그 사고원인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확실한 증거에 의해 보도하는 것이 취재기자의 올바른 자세요, 특히 그것이 스트레이트기사일 경우 분명히 밝혀진 사실외의 어떤 추리나 가능성을 기자 자신이 곁들여, 있을 수 있는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술에 취한 것과 술을 마신 것과는 엄밀히 구분돼야 할 내용임에도 「술을 마셨으니 취했을 것」이라는 추단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도 있다. 이 나룻배 사건의 경우 사건이 보도된 후 한국일보의 사설, 해설기사, 사건보도 기사, 그리고 연합뉴스의 제 1보와 이를 전재한 지방신문들이 K대학 76기 동문회장의 정정보도로 「만취승선」 운운의 보도부분이 고인들과 유족 및 관련 동문회원들에게 누를 끼쳤음을 인정 정정보도한 것 역시 「만취승객」 운운의 부분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사례 14> 민사계류중인 사건보도, 일방적 주장 수용은 편파적

사실개요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내용을 보도할 때 자칫 취재가 미흡해서 사건 당사자중 한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방향이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결과를 빚었을 때 그것이 고의에 의한 편향적 보도였건 또는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오보였던 간에 그와 같은 보도내용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다.

'84년 3월 13일자 부산일보 10면에 『17세대 거리로 나왔을 판』, 『반송동 무허가 건물 철거 이주대책 호소』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문제가 된 토지의 소유주인 신창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현복이 부산일보를 상대로 그 기사내용이 쟁송중에 있는 사건임을 지적,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진실인양 보도, 문제의 토지의 단독소유자도 아닌 토지소유회사의 대표이사를 마치 부동산투기업자나 악덕 모리배인양 인식시켰고, 사실과 다르게 확정 판결날짜나 강제철거 계획 등을 보도했으니 정정보도하라」고 요구 중재를 신청하였다.

보도내용

부산일보는 '84년 3월 13일자 10면에 『17세대 거리로 나왔을 판』, 『반송동 무허가건물 철거 이주대책호소』 제하 기사에서 「변두리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반송 1동 산 51의 140)에 무허가 주택을 건립 9년간 살아왔는데 최근 지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당장 갈 곳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무허가주택에 살고 있는 김순임씨 (여·46)등 17가구 주민은 오는 14일 강제철거당할 처지여서 갈 곳도 없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국에 호소했는데 76년부터 그곳에 살던 이들은 '79년에 지주 신모씨의 요구로 이곳 355평의 땅을 당시 시세대로 사기로 하고 대금 1천 490만원(평당 4만 2천원) 중 130만원을 지불했으나 '81년까지 잔금을 못 치뤄 계약금이 토지사용료로 상제되고 말았다 한다.

그러나 지주 신씨는 '83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 오는 14일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무허가 주택을 강제철거할 계획인데, 입주자들이 땅을 토지과표기준대로 평당 2만원에 넘겨 달라 사정중이나 신씨는 그 땅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분을 내기 위해서라도 싯가인 평당 1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해운대구청은 주택철거 판결이 나는 대로 대책위를 구성, 이웃돕기운동으로 철거민을 도울 계획이며 시영 임대주택에 그들을 입주시킬 방법을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여기서 문제된 기사는 기사화한 내용이 토지이용을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리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사실을 취급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형사사건일 경우라도 그 재판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기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상황 즉 검사의 주장(기소내용)과 피고의 진술(변호사의 변론내용포함)그리고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의 심리내용 등을 공평, 냉정하게 지면에 반영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 조금이라도 기자의 주관내지 편견이 삽입해서는 재판기사로서의 공평을 잃게 돼 공정한 보도에서 벗어나기 쉽다. 더구나 민사소송인 경우 그것이 자칫 원고나 피고 어느 일방의 주장에 치우친 보도가 될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의외의 피해를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언론보도가 재판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보도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무허가 건물을 짓고 남의 땅에 살아온 사람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의 주장은 지면에 잘 반영된 느낌인 반면 토지소유권자의 주장에 관해서는 그 비중이 소홀하게 다뤄진 느낌이고, 재판절차에 대한 기자의 확인(판결날짜)이 없었던 것도 오보의 한 요인이었다.

결국 부산일보는 4월 6일자 10면에 『거리로 쫓겨날 17세대 아파트임대해주기로 : 신창산업』이라는 제하의 속보 기사를 보도해 줌으로써 문제해결을 보았다.

<사례 15> 경찰이 관련된 폭행사건 보도에선 재확인이 필요해 사실개요

수사관계기관이 관련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관련경찰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한쪽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아 문제가 된 내용으로 '84년 6월 11일자 강원일보 제 11면에 『지서기물 파괴·경관폭행, 대학생등 셋 입건』 제하의 기사가 게재됐는데 「경찰에 대해 폭행을 하고 의암지서 안의 유리창과 기물을 부수고 근무중인 경찰관을 죽인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동료학생이 부상하여 차량편의를 경찰관에게 청하자 학생들의 자세가 건방지다고 대학생들을 지서로 끌고가 수갑을 채우고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 부상케 하였다」고 주장, 이 사건에 관련된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자기 사건 내용에 관해 묻지 않은 채 경찰관들의 주장만 듣고 마치

대학생들이 몹시 술에 취해 근무중인 경찰에 폭행, 기물을 파괴 한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다」고 정정 보도를 요구, 중재신청에 이른 것이다.

보도내용

강원일보는 '84년 6월 11일자 동지 11면에 『지서기물 파괴·경관폭행, 대학생 등 셋 입건』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춘천경찰서는 10일 오후 6시 20분께 의암지서 기물을 부수고 근무 경찰관을 폭행한 서점주인과 대학생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조사중인데 경찰에 따르면 하광운씨(23·춘천서점주인), 한기면씨(23·K대), 정명섭씨(24·K대) 등 3명은 하씨가 입술을 다쳤다며 근무중인 의암지서 김우경 상경에게 차를 잡아 줄 것을 요구, 이에 불응한다고 경찰관을 구타했다. 이들은 지서 안의 현관유리창 2장, 지서장 책상위의 대형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로 죽인다고 협박하다 출동형사에게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의기지서 안치선순경이 깨진 유리에 찔려 오른손에 6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김우경상경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 대학생은 의암지서에서 1km 떨어진 강가에서 동문인 고 최승수 군의 2주기 추모모임에 참가했다가 술에 취해 이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이었다(요약)

물론 경찰관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보도기관에 대해서 특정사실을 공표할 때, 설혹 경찰관이

직접 관련된 사건일지라도 어떤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사실을 밝혀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일단 경찰의 공신력을 믿고 발표된 내용을 지상에 공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의암지서요, 그것을 보고받고 기자에게 사고내용이 알려진 곳은 상급관서인 춘천서였다.

경찰하부기관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문책당할 내용을 자진해서 보고할 리가 없다고 볼 때 냉정한 입장에서 기자는 일선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의 사실여부를 재확인하는 노력이 꼭 필요했다고 보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보고에 따르면……」이라는 간단한 전제아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지면에 반영시키는 안일한 보도 자세를 취한 것이 사건의 일면만 보도한 첫 요인을 이뤘다고 본다.

당연히 관련 대학생측의 주장도 들어왔어야 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관련대학생들이 강원일보의 이 사건에 대한 보도내용이 「정당한 보도자세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사내용 또한 현저히 사실과 다르니 정정보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대학생들의 자세가 건방지다고 학생들을 지서로 끌고가 수갑을 채우고 구타 경찰봉과 M16 소총 개머리판 등으로 구타, 의용경찰 김우경은 M16 소총을 가슴팍에 들이대며 쏘아죽인다고 위협, 식칼까지 휘두르는 등 폭행을 당해 정군의 경우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진단 5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강원일보는 8월 27일자 지면에 속보형식의 정정 보도를 냈다.

대학생들이 의암지서 경관등 4명을 춘천지검에 고소, 조사결과 사건이 우발적이었음을 참작, 관련경찰관 3명과 대학생 정군은 무혐의로 또 이상경과 대학생 하, 한군 등 관련자 3명이 기소유예 처분된 것만 봐도 보도가 일방적이었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사례 16> 의료관계분쟁보도에는 전문가의 판단 곁들여야

사실개요

최근 의료관계분쟁을 보도함에 있어 의료관계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지면에 반영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는 수가 많다. 바로 그 실례의 하나가 '84년 8월 27일자 동아일보 10면에 게재된 『문화입원 서적 판매원 「치료 소홀로 불구」 진정』 제하의 기사.

「서적외판원 차정순(34·충남 서산읍 동문리 거주)이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그 동리 조모외과에 입원했는데 의사 조씨는 한번도 '치료를 않고 간호원이 상처부위를 꺾매고 X-레이를 찍은 후 부목을 해준 다음 경과가 좋으니 퇴원하라'해서 퇴원, 서울 카톨릭 의대부속 강남성모병에서 정밀진단을 해 본 결과 상처가 전혀 치유되지 않아 수술을 받아도 목발신세를 못 면하게 됐다고 의사 조씨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는 것이 보도내용(요약)이었다.

이에 대해 피소된 의사 조씨는 『차씨가 입원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안정을 요하는 시기에 환자 임의로 3번이나 퇴원, 기브스등에 손을 대어 치료 경과를 그르쳤으며 카톨릭

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 담당의사의 진단결과 역시 초진과 치료가 잘 돼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 신문이 차씨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 들여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케 했다고 정정보도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

보도내용

동아일보는 84년 8월 27일자 10면에 『문화입원 서적외판원 「치료소홀로 불구」 진정』 제하의 기사에서 『서산=기동취재』 총보 서산읍 동문리 차정순씨(34·서적판매원)가 교통사고로 무릎관절을 다쳐 동네 조모 정형외과에 입원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불구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지난 25일 관계 당국에 진정했다』는 서두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요지만 적출)

「① 8월 21일 저녁 병원사무실에서 차씨는 조원장의 부인과 치료문제로 말다툼하다 수술실에서 뛰쳐 나온 조씨에게 발을 맞고 쓰러졌다.

② 오토바이에 치어 병원에 입원(3월 29일)한 후 17일 동안 입원했으나 조의사의 진찰을 한번도 못받고 운전기사와 간호원 2명이 X-레이를 적고 상처부위를 껴맨 후 목발을 매졌을 뿐이다.

③ 4월 15일, 경과가 좋다는 진단에 따라 퇴원 했으나 통증이 심해 서울 카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골절치유가 안돼 있어 수술을 받아도 목발신세를 못 면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 차씨는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머큐러크롬을 발라주고 소염제만 투여하면 그만이나>고 불만을 터뜨린데 대해, 의사 조씨는 <수술여부는 환자의 용태에 따라 의사가 결정한다. 차씨의 경우 집도하지 않은 것은 상처가 자연상태에서 봉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⑤ 차씨는 병원측의 무책임한 처신에 대해 경찰에 고소, 서산서에 사건이 이첩됐으나 조사는 지지 부진한 상태』라는 보도 내용으로 봐서, 기사내용이 고소, 진정한 차씨편에 편중돼 있다. 결국 동아일보는 10월 23일자 지면에 속보형식으로 정정 보도를 내어 병원측 정정요구를 들어 줌으로써 이 사건을 해결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진정·고소사건을 경솔하게 보도해서는 안된다.

이점 기자가 초보적인 과오를 범했고 「기동취재」의 대상이 될 단순한 성질의 사건도 아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건이건 진정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장도 있어 항상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가벼운 판단은 금물이다.

특히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는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의 주장만이 늘 옳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역시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보도돼야 옳다.

<사례 17> 인터뷰사실없이 면담기사화한 것은 위법 사실개요

직접 면담한 바 없는 특정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기자가 흥미위주로 구성, 지면에 공표한다면 그것은 분명 프라이버시 침해요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업무상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면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직접 면담을 했다고 해도 개인의 아픈 곳을 찌르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공표한대도 그것을 올바른 보도자세라고는 볼 수 없는데, 면담도 않고 면담한 양 임의로 어떤 내용을 보도했다면 그것이 설혹 사실일 경우라도 문제되는 것이다.

'86년 「주부생활」 1월호(185~195면)에 게재된 『준·라보의 직접증언 : 나의 심령수술 정체를 밝힌다』, 『제2장, "준라보"에게 심령수술 받았다는 국내환자 직접취재』 제하의 기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항의의 대상이 돼 관계자로부터 정정, 사과문게재요구를 받고 중재결과 「주부생활」 측은 신청인의 정정요구에 응했다.

문제된 부분은 필리핀의 심령치료사 「준라보」의 직접치료를 받은 서울 태릉의 H병원 원장 L박사의 부인 K여사에 관한 대목.

L박사도 K여사도 「주부생활」사의 기자와는 인터뷰한 적이 없으나 기사내용은 인터뷰한 것으로 돼 말썽이 됐다. 결국 「주부생활」은 '86년 3월호에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가 내용을 임의로 구성했음을 밝히는 사과문을 냈다.

보도내용

'86년 1월호 「주부생활」의 185면에서 195면에 걸쳐 게재된 『준라보의 직접증언 나의 심령수술 정체를 밝힌다』, 『제2장, 준라보에게 심령수술 받았다는 국내환자 직접취재』 제하의 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지난 9월 22일 필리핀의 유명한 심령치료자 준라보가 한국을 다녀간 이후, 가수 김수희가 후두암과 유방암을 바로 심령치료로 완치 했다는 보도가 있는 후 필리핀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외무부 여권과가 붐빌 정도라니 그 열도를 짐작할 수 있다 (중략)

기자는 태릉에서 H병원이라는 제법 큰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학박사 L모씨의 부인 K여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부인은 간암말기로 이미 병원에서는 2~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

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죽음의 공포로 몸부림 치는 아내를 보다 못한 남편이 먼저 필리핀행을 권유했다.

「심령치료의 효과를 믿기 때문에 아내를 바기오市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준라보씨에게 보낸 것이지요」

K부인은 10월 6일 바기오에 도착 준라보씨에게 몇차례 시술을 받고(중략) 준라보로부터 간

암이 완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12월 중순 귀국, 요양중인 K부인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은 싫다고 극구 인터뷰를 사양하였다.

「저희 병원, 이젠 문닫게 생겼어요. 의사부인이 심령치료 받고 살아 났다니까 누가 병원에 찾아 오겠어요? 저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입니다. 준라보씨 덕분에 새로 태어난 사실에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만, 앞에 나서서 떠들어 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인 걸요」 (후략)

이 기사를 볼 때 기자는 L박사와 K부인을 직접 만나 「라보씨」의 영험에 관한 증언을 들은 것처럼 돼있는데 L박사나 K부인은 전혀 기자와 인터뷰한 적이 없고 K부인이 기자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으나 보도하지 말라고 거절했을 뿐 그 이상 이야기 한 바 없다는 것이니,

인터뷰에 관한 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셈으로 직업윤리를 벗어난 불법행위인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심리학자 「준라보」의 영험으로 불치의 병 (간암말기)을 지닌 K 부인(의학박사의 아내)이 시한부인 2~3 개월이 지나도 살아남아 「새로 태어난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직접 증언했다면 「준라보」의 심령수술에 관심 안 갈 환자는 없을 것이다. 우선 이 「주부생활」의 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K 부인의 병증공표)를 침해했고, 허위인터뷰기사로 「준라보」의 심령수술을 선전한 결과를 아울러 범했다고 본다.

어떤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라도 그 병력을 밝히는 것은 프라이버시침해인데 살아있는 사람의 절망적인 병증을 밝히는 것을 상식이하의 일이다.

<사례 18> 본인 동의없는 사진공표, 엄연한 초상권침해 사실개요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한 광고행위가 초상권침해로 항의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뚜렷한 실례가 '84년 10월 14일자 「선데이 서울」(서울신문사 발행) 제 31면 광고판에 게재 됐던 『유능한 연기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

『신인 남녀 TV탤런트 영화 연극배우 CF 모델 선발』 제하의 「예림연기실」 명의의 광고였다.

문제의 광고우측 상단에 실린 카메라를 메고 촬영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명한 실물사진은 한

눈에 그 주인공을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카메라를 메고 있는 사람은 KBS 보도본부의 취재기자로 재직중인 장병욱씨로 본인의 사전양해없이 광고 내용에 무단 삽입해서 광고효과용 사진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당연히 초상권을 침해당한 KBS의 장병욱 기자는 「장기자 본인의 사진이 사전 승락없이 광고지면에 무단게재돼서 초상권침해가 될 뿐아니라 그 광고를 보면 마치 장기자와 광고주 <예림 연기실>이 동업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장기자가 <예림연기실> 소속 사원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니 선데이 서울은 광고게재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① 사진이 무단게재됐다는 것과 ② 광고주 <예림연기실>과 장기자와는 아무관련이 없음」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데이서울측의 불출석으로 중재는 성립되지 못했으나 추후('84. 10. 14)

「선데이서울」 광고란 (31 편)에 예림연기실(대표 정일택)이 사과문을 게재(문제된 사진재록), 해결을 보았다.

보도내용

문제된 광고문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선데이 서울」 '84년 10월 14일자 31면 광고란에 『유능한 연기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에 『유능한 연기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 『신인 남녀 TV탤런트 영화연극 배우 CF모델 선발』이라는 제목 바로 아래 우측에 TV카메라를 메고 촬영포즈를 취한 장병욱기자(KBS 보도본부 카메라 취재부)의 뚜렷한 사진을 담고 그 옆에 「본 연기실은 20여년간 예능교육과 후배양성에 공이 커 83년도 영화공로상을 받은 정일택 감독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서 금번 각 극영화사와 각 TV방송국 프로담당분들과 손을 잡고 84년도 하반기 각 극영화사 제작 작품과 각 TV방송국 프로 개편에 대비하여 주·조연, 단역으로 출연할 신인배우와 CF모델을 선발하오니 직접 연예인으로 활동할 뜻이 있는 분은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라고 굵직한 활자로 눈에 띄게 광고문을 실은 아랫쪽에 응모요령, 심사위원, 그리고 응모자의 투자 등을 나열하였는데 TV방송국에 재직중인 카메라취재기자의 실물사진까지 곁들여 마치 어떻게 보면 방송국보도부문 관계자까지 동연기실에 협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하는 광고내용이었다.

문제의 사진은 「KBS '84TV 가이드」에 게재됐던 장병욱기자의 사진으로 광고주측이 동 사진을 게재하겠다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전혀 일방적인 무단게재였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법률상 우리 나라에서도 초상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어떤 형태로건 무단사용될 수 없다.

물론 광고물 같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남의 실물사진, 또는 초상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 유명인사(정치인, 탤런트, 학자, 예술가, 공직자 등)로 그 유명인사와 관련된 뉴스와 결들여 보도기관에서 지면 또는 화면에 공표할 경우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을 신중하게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다. 공공목적을 위해 초상이 사용됐을 경우라도 그것이 극히 악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임

<사례 19> 연예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 미확인 사실의 익명보도는 삼가야 사실개요

일부 특정인의 주장이나 거기에 국한된 사실을 보편적인 사실로 오인케하는 보도자세는 그것이 어떤 부문에 관한 것이건 간에 엄정한 보도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영화계의 이면을 파헤친 「주간 중앙」(85년 4월 21일자, 3,4면)의 『특집...영화계 긴급 진단』 내용이 문제된 것도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가의 긴급진단』, 『감독에 육탄공세 퍼는 여배우들』, 『살롱출신 여배우 최초공개』라는 표지제목과 『특집... 영화계 긴급 진단 ① 영화계선 공공연한 비밀』, 『A 양도 B 양도 호스티스였다』, 『글래머 S·Y 양, 앳된 J 양 외에도 수두룩』, 『특집... 영화계 긴급 진단 ② 감독과 여배우의 깊은 관계 정말 그런 사이인가?』, 『60년대엔 여배우가 먼저 호텔 잡아놓고 연락도』, 『출세 시키려 엄마가 딸 현상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국영화인협회」가 「막연한 소문이 나 유연비어 만을 근거로 전체 영화인들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기사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점을 정정, 사과하라」고 요구, 중재신청('85. 5. 7)을 했으나 중재가 불성립, 결국 법원에 제소(5. 30)했다.

보도내용

주간중앙에 보도된 『특집……영화계 긴급진단 ① 영화계선 공공연한 비밀』, 『A 양도 B 양도 호스티스였다』, 『글래머 S·Y 양, 앳된 J 양 외에도 수두룩』 제하기사('85, 4 21. 3 면)에는 「K(24)라는 낙도출신 여배우는 한동안 패션·CF 모델을 했지만 현상유지가 힘들어 명동의 모 룸·살롱에 잠깐 나갔고 ……………'83년부터 주로 에로터시즘 주제 영화 3 편째 출연중으로, 그녀에겐 몸뚱이 하나가 전재산, 모든걸 몸으로 때우는 전형적인 타입이라는 말을 감독들간에도 듣고 있다」 「또 다른 K(21)도 CF 모델 경험이 있는 1m 63cm 의 키에 뒤에서도 젓가슴이 보일 정도의 글래머여서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K 역시 L 감독에 의하면 영동 신사동의 K 룸·살롱의 호스티스였다는 것, 그런데 국내 여배우의 상당수가 영화에 진출, 쫓가를 올린 다음 다시 야간업소 등에 파트너로 나와 20~30 만원씩 팁을 받고 있고 Y 양의 경우 부산까지 원정, 젊은 사장측과 동침, 50~100 만원까지 받고 있다」 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편 『특집……영화계 긴급진단 ② 감독과 여배우의 깊은 관제 정말 그런 사이인가?』, 『60년대엔 여배우가 먼저 호텔잡아놓고 연락도』, 『출세시키려 엄마가 딸 현상도』 라는 제하의 기사('85. 4. 21……4 면)에서는 「애마부인」 시리즈의 정인화 감독과 배우 오수비의 출연제약을 둘러싼 분쟁이면에 「몸을 요구했다」 는 오배우의 주장과 이를 부인 하는 정감독의 주장을 배경으로 감독과 여배우사이의 출연문제를 둘러싼 아름답지 못한 소문들을 들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영화인협회 (영화예술에 종사하는 영화예술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는 「일국의 연예인들을 몽땅 싸잡아 호스티스출신이다. 살롱에 나가 몸을 판다. 감독들이 잣밥이다 하는 무책임한 표현을 할 자유와 권리까지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기사내용이 허위의 소문만을 사실인양 믿고 게재한 것이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영화 연기인들에게 사과하는 정정보도문을 내라」 고 요구,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여성중앙」 측은 이에 불응, 결국 문제가 법원에 제소(5. 30)됨으로써 「주간中央」은 6 월 30 일자 자면례 『호스티스 출신 여배우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개정영화법 맞은 배우협회 이미지 쇄신, 금지회복선언』 제하 기사를 게재, 화해 (7. 4)하였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연예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 없이 오락잡지의 중요한 읽을 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고 대중화시대에 대중적 인기가 집중되고 있는 인기연예인일 경우 항상 연예기자들의 추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연예인에 관한 특정사실을 연예인 전체에 공통된 경향으로 일반독자를 오신케하는 부정확한 내용은 물론, 연예인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

전연 도외시될 수는 없다고 본다.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을 실명으로 뚜렷이 밝히는 것이 언론의 정도일 것이다.

<사례 20> 기사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게재, 보도목적에 정면위배 사실개요

'86년 3월 13일자 농수축산신보 9면에 『실속없는 국내 패스트푸드업계 거액의 로열티 지불로 고전』, 『경영악화로 적자불면』, 『무리한 상표도입 시장붕괴우려』 제하의 기사와 함께 좌측상단에 「버거잭 코리아」 반포지점의 전면사진을 게재 했다.

기사의 초점은 국내 패스트푸드업계에 「웬디」, 「버거킹」 등 외국 브랜드가 들어와 치열한 판매권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과 합작한 회사들이 점포 개설시마다 2만달러씩의 선불금을 지불하는 외에도 순매출액의 2.22~4.44%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불리한 계약을 맺어 경영악화로 적자를 못면하고 시장붕괴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와 함께 게재된 「버거잭코리아」 반포점사진과는 달리 기사내용 어느 곳에도 「버거잭코리아」에 관한 부분이 없고 「버거잭코리아」는 로열티 지급조건도 매우 유리, 경영도 건실한데, 사진을 임의로 게재함으로써 마치 「버거잭코리아」 역시 기사내용중의 사실에 포함되는 인상을 주어 영업활동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하게 됐다.

결국 농수축산신보는 '86년 4월 3일자 9면에 『틀린 사진을 고칩니다』 제하의 정정기사를 「버거잭코리아」 반포점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농수축산신보, '86년 3월 13일자 9면에 『실속 없는 국내패스트푸드업계 거액로열티 지불로 고전』 등 제하에 실린 기사를 요약하면 「국민식생활 패턴 변화로 인스턴트식품이 판을 치면서 붐이 일기 시작한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외적 성질과는 달리 실속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업계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외국메이커들의 치열한 판매가 벌어지고 있으나 순수 국내 브랜드인 롯데리아가 햄버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태리와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피자 인 아멜리아>가 피자업계의 대표적인 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패스트후드를 휘어 잡고 있는 것은 외국브랜드이다.

외국브랜드중 햄버거 부문의 웬디의 경우 미 「웬디」사와 합작한 (주)웬코가 '84년 12월부터 앞으로 10년 계약기간동안 선불금조로 점포개설 때마다 2만 달러를 내고 기술료는 순 매출액의 2.22~4'.44%를 내게 돼있다.

한암은 미 「버거킹」사와 합작 및 기술제휴, 80년에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착수는 '85년 4월 부터인데 상표사용에 점포당 2만 달러씩, 순매출액의 4%의 기술료를 낸다.

한양유통의 「데어리 퀴」도 '84년에 선불금 2만 5천 달러에 기술료가 4%로 5년간 기술도입계약을 맺었다.

또한 패스트푸드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식품은 아이스크림과 도너츠, 켄터키프라이드치킨과 피자류인데 피자 부문의 경우 한국화약이 미 「쉐이키인터내셔널」사와 기술제휴를 맺었고 「피자허트」는 동신식품을 통해 국내에 상륙했다.

이들이 계약한 로열티는 한국화약이 선불금 15만 달러에 기술료는 순매출액기준 3.5%(계약기간 10년), 동신식품은 선불금 20만달러에 기술료 3%(5년), 이밖에 「피자인」의 조영물산이 선불금 1만달러에 기술료 3.5%, 8년간 기술도입계약이 있다.」라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기사 어느 곳에도 「버거잭코리아」에 관해 언급된바 없는데 「버거잭코리아」의 반포점사진이 게재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착오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TV 화면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실을 보도 할 때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화면을 내 보내면서 「이 화면은 특정사실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하며, 신문 역시 특정기사와 함께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을 실으면서 이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붙이는 때가 있는 데, TV는 배경화면이 필요하니 경우에 따라 불가피한 하나의 편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활자매체인 경우 좀 저항감을 느끼게 한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특정업체에 관한 기사를 실으면서 엉뚱한 아무 관련없는 업체의 사진을 그것도 당장 분간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을 실어 영업상 지장을 주는 보도자세는 지양돼야 한다.